

일련번호	1-1
------	-----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체험학습차량 관련 계약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은정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따라 유치원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집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제33조(지출의 방법)에 따라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 등으로 정당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은정유치원은 아래의 [표1]과 같이 현장 체험학습 차량 계약시 계약서와 차량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차 계약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계약서, 차량관련 증빙서류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1] 현장체험학습 임차내역

일자	적요	계정 과목	지출 (단위: 원)	증빙서류
2018.04.23.	견학차량비(소풍관광버스2대)	행사비	400,000	증 제226호

조치할 사항 은정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차량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